

##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

### □ 사업목적

-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에게 투텅고 촘촘하게 지원으로 사각지대 최소화

### □ 지원대상 및 금액

구 분	집합금지		영업제한	일반업종			
	지속	완화		경영위기 (매출 20%이상 감소 업종)			매출감소
기준	6주 이상	6주 미만	영업제한	60% 이상 감소	40% 이상 60%~미만	20% 이상 40%~미만	-
매출액 요건	소기업	소기업	소기업& 매출감소	소기업& 매출감소			매출 10억원 이하 & 매출감소
지원금액	<b>500만원</b>	<b>400만원</b>	<b>300만원</b>	<b>300만원</b>	<b>250만원</b>	<b>200만원</b>	<b>100만원</b>

\* 매출액은 국세청 확인정보만 인정(개별 매출 증빙 불인정)

\*\* 해당사업체의 20년 매출액이 업종별 소기업을 판단하는 매출액 이하일 것  
- 음식·숙박: 10억원, 도소매:50억원, 제조:120억원 등

### □ 지원 제외대상

- 사행성 업종, 변호사·회계사, 병원·약국 등 전문직종, 금융·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업종
- 21.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
-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'19년 보다 '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
-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'20년에 매출이 증가
-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, 비영리기업,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및 휴(폐)업 소상공인

## □ 지원방법

- 신청기간 : 2021. 3. 29. ~ 종료 시
- 신청방법 : 온라인 사이트 접속 “버팀목자금플러스.kr” 접속  
대상조회(사업자번호) → 본인인증 → 정보입력(계좌번호) → 지급

문의처 : 콜센터 1811-7500 / 군청 지역활성과 860-3192~3195